

소 장

원 고 ○○○ (주민등록번호)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○)
전화·휴대폰번호: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 고 주식회사◇◇◇◇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○)
대표이사 ◈◈◈
전화·휴대폰번호: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임금 및 퇴직금청구의 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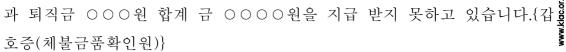
청 구 취 지

- 1. 피고는 원고에게 금 ○○○○원 및 이에 대한 20○○. ○○. ○○.부터 20○○. ○○. ○○.까지는 연 6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- 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- 3.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청 구 원 인

1. 원고는 전기공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19〇〇. 〇. 〇.부터 20〇〇. 〇. ○.까지 근무하였으나 20〇〇. ○.월분 및 ○월분 급여 금 ○○○원



2.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 금 ○○○○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인 20○○. ○○. 부터 14일째 되는 날인 20○○. ○○. ○○. 아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렀습니다.

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 체불금품확인원

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 1통

1.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통

1. 소장부본 1통

1. 송달료납부서 1통

2000. 0. 0.

위 원고 ㅇㅇㅇ (서명 또는 날인)

ㅇㅇ지방법원 귀중

관할법원	※ 아래(1)참조	소멸시효	○○년(□ ⁻ 소멸시효일람표 ^^
제출부수	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		
비용	・인지액 : ○○○원(☞산정방법) ※ 아래(2)참조 ・송달료 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		
불복절차	・항소(민사소송법 제390조)		
및 기 간	·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(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)		
<u>ス</u> 1	 ・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(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) ・소멸시효의 기산점인 「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」라 함은 권리를 하사함에 있어서 이행기 미도래, 정지조건 미성취 등 법률상의 장애가 유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, 근로기준법 제36조(현행 제37조) 소정의 급증 청산제도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사용자로 하여금 14일 내에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 등의 금품을 청산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학편,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형사상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지 사용자에게 위 기간 동안 임금이나 퇴직금지급의 의 이행을 유예하여 준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, 이를 가리켜 퇴근 금청구권의 행사에 대한 법률상의 장애라고 할 수는 없고, 따라서 퇴근 금청구권의 행사에 대한 법률상의 장애라고 할 수는 없고, 따라서 퇴근 금청구권의 행사에 대한 법률상의 장애라고 할 수는 없고, 따라서 퇴근 금청구권은 퇴직한 다음날부터 이를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(대법원 2001. 10. 30. 선고 2001다 24051판결). ・피고회사가 상인이라면 피고회사가 그 근로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그의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 보조적 상행위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지급채무는 상사채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지연 한해금은 상법에서 정한 연 6%의 이율을 적용할 수 있음(대법원 1977. 12. 선고76다 497 판결, 1976. 6. 22. 선고 76다 28 판결). ・근로기준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(현행동 제37조) 부분이 신설되어, 2005.7.1. 이후 퇴직 및 사망 등으로 인하여 '근로관계가 종료된'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지급사유 발생을 로부터 14일이 경과된 날(15일째)부터 지급일까지 연20%의 지연이자를 모르는 되었다. 		
기 타	금청구권의 행사에 대한 법률상의 장애라고 할 수는 없고, 따라서 퇴존 금청구권은 퇴직한 다음날부터 이를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(대법원 2001. 10. 30. 선고 2001다24051판결). • 피고회사가 상인이라면 피고회사가 그 근로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을 그의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 보조적 상행위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지급채무는 상사채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지연을 해금은 상법에서 정한 연 6%의 이율을 적용할 수 있음(대법원 1977. 412. 선고76다497 판결, 1976. 6. 22. 선고 76다28 판결). • 근로기준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(현행동목제37조) 부분이 신설되어, 2005.7.1. 이후 퇴직 및 사망 등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지급사유 발생용		

※ (1) 관 할

- 1. 소(訴)는 피고의 보통재판적(普通裁判籍)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,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,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,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.
- 2.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.
- 3.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(특정물의

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, 그 밖의 ੈ 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: 민법 제467조 제1항, 제2항)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.

※ (2) 인 지

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. 다만,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·직불카드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,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(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).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소의 제기 >>이행의 소